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 련 3110
----------	-------------

제안연월일 : 2022년 4월 8일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본 개정조례안은 기준가격 대비 시세 비율이 146.2%에 달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재심의 범위를 완화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나, 재심으로 인하여 계약이 지체되어 매도자의 거래가액 상향 요구 또는 매각 의사 철회 등으로 거래가 결렬되는 등 사업이 지연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공유재산심의회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 이후 재심을 통해 거래가격 적정성을 재심의하여야 하는 절차적 한계를 감안하여, 공유재산 취득·처분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사업추진의 신속성 제고를 위하여 재심의제도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유재산심의회 기능 중 감정평가를 통해 계약하려는 금액이 기준가격의 160퍼센트 이상인 재산의 취득이나 기준가격의 140퍼센트 이하인 재산의 처분에 따른 재심의 규정을 삭제함(제4조의2 제1항 제6호 삭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의2 제1항 제6호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5. <중략></p> <p><u>6. 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 의 130퍼센트 이상인 재 산의 취득 및 감정평가액 이 기준가격의 130퍼센 트 이하인 재산의 처분에 따른 재심의</u></p> <p>7. <생략></p> <p>8. <생략></p>	<p>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 -----.</p> <p>1. ~ 5. <현행과 같음></p> <p><u>6. 감정평가를 통해 계약하 려는 금액이 기준가격의 160퍼센트 이상인 재산의 취득이나 기준가격의 140 퍼센트 이하인 재산의 처 분에 따른 재심의</u></p> <p>7. <생략></p> <p>8. <생략></p>	<p>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 -----.</p> <p>1. ~ 5. <현행과 같음></p> <p><u>6. <삭제></u></p> <p>7. <생략></p> <p>8. <생략></p>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1항 제6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 기능)</p> <p>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5. <생략></p> <p>6. <u>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의 130퍼센트 이상인 재산의 취득 및 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의 130퍼센트 이하인 재산의 처분에 따른 재심의</u></p> <p>7. <생략></p> <p>8. <생략></p>	<p>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 기능)</p> <p>①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삭제></p> <p>7. <생략></p> <p>8. <생략></p>